

제1772호

2020. 8. 13.(목)

발행인 : 영등포구청장
편집인 : 홍보미디어과장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당산로 123
전화 : 02-2670-7561

영등포구보

입법예고

- 제2020-1365호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동주민센터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고 시

- 제2020-154호 지적기준점 측량성과 고시4
- 제2020-156호 도로명주소 부여, 폐지 고시 5
- 제2020-157호 도시관리계획(부도심권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8

공 고

- 제2020-1322호 공인 등록 공고 11
- 제2020-1352호 도시관리계획(강남성심병원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안) 재열람공고 1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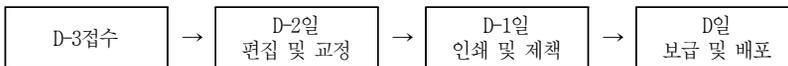
※ 구보게재를 의뢰한 각 부서에 알려드립니다.

구보의 게재내용은 영등포구홈페이지<<http://www.ydp.go.kr>(영등포소식→새소식→영등포구보)>에 게재되고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구보게재의뢰 및 편집문의 (☎ 02-2670-7561 / 전송: 02-2670-3581)

◎ 구보발행일은 매주 목요일 (공휴일인 경우 익일 발행, 공포 등 필요시 발행일 조정 가능)

◎ 구보게재접수는 D-3일(월요일)까지 접수



영등포구 발간등록번호
3180244-0071-2020

입법예고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공고 제2020-1365호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동주민센터 설치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구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5조 및 제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0년 8월 13일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청장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동주민센터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신길9재정비촉진구역 사업 구역 내 혼재되어 있는 동주민센터 관할구역 조정을 통하여 공동주택 생활권과 동행정구역을 일치시켜 주민 편의를 도모함과 동시에 공동주택 관할구역의 통일성을 부여하여 행정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동주민센터 설치, 명칭과 소재지 관할구역 조정(별표)

- 신길제4동 관할구역을 “신길동 239번지1호 동북지역의”에서 “신길동 3518번지에서 이면도로(신길로28길)를 따라 신길동 3183번지63호, 북동방향으로 3183번지288호, 동쪽방향으로 신길동 3183번지295호, 북동방향으로” 로 변경
- 신길제6동 관할구역을 “신길동 3514번지1호를”에서 “신길동 3483번지를” 로, “북동방향으로 신길동 243번지58호에서 서쪽으로 기점까지 이르는 지역”에서 “북동방향으로 신길동 2001번지8호에서 서쪽방향으로 신길동 3183번지234호, 남서방향으로 신길동 3193번지에서 서쪽으로 기점까지 이르는 지역” 으로 변경

3. 의견 제출

이 조례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8월 23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청장 [참조: 자치행정과장, 주소: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당산로 123, 전화: 02-2670-3157, 팩스: 02-2670-3596]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다. 기타 필요한 의견사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조례 제 호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동주민센터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동주민센터 설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동주민센터 설치, 명칭과 소재지 관할구역 중 신길제4동의 법정동 관할의 “신길동 239번지1호 동북지역의” 를 “신길동 3518번지에서 이면도로(신길로28길)를 따라 신길동 3183번지63호, 북동방향으로 3183번지288호, 동쪽방향으로 신길동 3183번지295호, 북동방향으로” 로 한다.

별표 동주민센터 설치, 명칭과 소재지 관할구역 중 신길제6동의 법정동 관할의 “신길동 3514번지1호를” 를 “신길동 3483번지를” 로 하며, “북동방향으로 신길동 243번지58호에서 서쪽으로 기점까지 이르는 지역” 을 “북동방향으로 신길동 2001번지8호에서 서쪽방향으로 신길동 3183번지234호, 남서방향으로 신길동 3193번지에서 서쪽으로 기점까지 이르는 지역” 으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별표 동주민센터 설치, 명칭과 소재지 관할구역			
동주민센터 명칭	동주민센터 소재지	법 정 동 관 할 일부지역관할	동주민센터 소재지
신길 제3동	(생 략) (생 략)	(생 략) 신길동 221번지4호를 기점으로 하여 신길로에 연하는 신길동 239번지1호 동북지역의 신길동 4994번지를 경유하여 이면도로를 따라 신길동158 번지68호 도신로에 연하여 기점까지의 지역	법 정 동 관 할 일부지역관할 (현행과 같음)
신길 제4동	(생 략)	신길동 3518번지에서 이면도로(신길로28길)를 따 라 신길동 3183번지63호, 북동방향으로 3183번지 288호, 동쪽방향으로 신길동3183번지295호, 북동 방향으로	(현행과 같음)
신길 제5동	(생 략)	(생 략)	(현행과 같음)
신길 제6동	(생 략)	신길동 3514번지1호를 기점으로 신길로를 따라 시흥대로 만나는 지점에서 여의대방로를 따라 신 길동 623번지에서 이면도로(여의대방로35길)를 따라 신길동 2350번지, 서쪽(신풍역)방향으로 2859번지, 신풍로7길 시점부터 종점까지, 종점에 서 신길동 2013번지를 지나 북동방향으로 신길동 243번지58호에서 서쪽으로 기점까지 이르는 지역	신길동 3483번지를 부동방향으로 신길동 2001번지8호에서 서쪽방향으로 신길동 3183번지 234호, 남서방향으로 신길동 3193번지에서 서쪽으 로 기점까지 이르는 지역

고 시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고시 제 2020-154호

지적기준점 측량성과 고시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 규정에 따라 지적기준점(지적도근점) 측량성과를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20년 8월 13일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청장

○ 지적기준점(지적도근점) 측량성과

기준점 번호	세계측지계				지역좌표계		표지 재질	토지소재지
	경 위 도		평면직각좌표(m)		평면직각좌표(m)			
9567	위도	37-31-31.2990	X	547322.69	X	447016.79	철재	영등포동7가 94-387
	경도	126-54-34.6849	Y	192012.11	Y	191941.29		
9568	위도		X	547300.41	X	446994.51	철재	영등포동7가 94-4
	경도		Y	192143.68	Y	192072.86		
9569	위도		X	547272.18	X	446966.28	철재	영등포동7가 94-3
	경도		Y	192082.77	Y	192011.96		
9570	위도		X	547223.80	X	446917.89	철재	영등포동7가 94-3
	경도		Y	192110.55	Y	192039.74		

기준 원점명	중부원점
설 치 · 측 량 일	2020년 7월 23일
측량성과 보관 장소	영등포구청 부동산정보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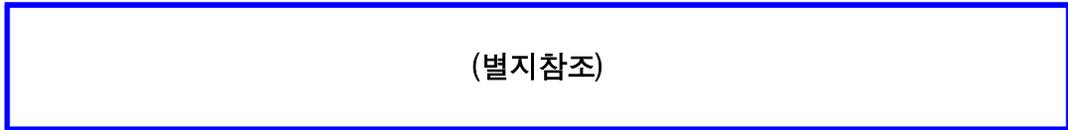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고시 제2020-156호

도로명주소 부여, 폐지 고시

도로명주소법 제18조제2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23조, 제24조, 제25조에 따라 건물 등에 부여, 폐지한 도로명주소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0년 8월 13일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청장

○ 도로명주소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영등포로 144 (당산동1가) 외 28건



※ 고시내용 및 기타 자세한 사항은 영등포구청 부동산정보과(☎2670-3724)에 문의 또는 새주소 안내 홈페이지(www.juso.go.kr)에서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 도로명주소 사용 및 공부상 주소전환

- 도로명주소는 고시 후 도로명주소법 제19조제1항에 의거 공법관계에 있어서 주소로 사용됩니다.
- 공공기관에서 비치·관리하고 있는 각종 공부상 주소(소재지)는 해당기관에서 도로명주소로 변경합니다.

○ 도로명주소 변경 등

- 도로명 또는 건물번호의 변경은 도로명주소법 시행령 제7조의3 및 제9조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도로명은 도로명주소법 시행령 제7조제7항에 의거 당해 도로명이 고시된 날부터 3년이 지난 후에 변경할 수 있습니다.

○ 참고사항

- 공동주택의 경우 종전주소의 공동주택명, 동호와 도로명주소의 상세주소는 공법관계의 각종 공부상 기재된 주소로 한다.
- 급변 폐지된 도로명주소는 주소로써 사용할 수 없으며, 건물 신축 등이 발생하면 새로운 도로명주소가 부여됩니다.

■ 도로명주소 부여 조서

고시일 : 2020.8.13.

연번	지번주소	도로명주소	도로명주소 고시일	도로명고시일	도로명부여사유	비고
1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당산동1가 14-4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영등포로 144 (당산동1가)	2020-08-13	2010-04-22	역사성이 많은 영등포 지명 인용	신규 부여

■ 도로명주소 폐지 조서

폐지고시일 : 2020.8.13.

연번	도로명주소	폐지일	폐지고시일	비고
1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당산로35길 3 (당산동4가)	2020-08-10	2020-08-13	대장 말소
2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대방천로6길 4 (신길동)	2020-08-10	2020-08-13	대장 말소
3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대방천로6길 6 (신길동)	2020-08-10	2020-08-13	대장 말소
4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대방천로6길 6-4 (신길동)	2020-08-10	2020-08-13	대장 말소
5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가마산로48길 24 (신길동)	2020-08-10	2020-08-13	대장 말소
6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가마산로48길 24-6 (신길동)	2020-08-10	2020-08-13	대장 말소
7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가마산로48길 24-8 (신길동)	2020-08-10	2020-08-13	대장 말소
8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도림로63길 25-1 (신길동)	2020-08-10	2020-08-13	대장 말소
9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도림로63나길 3-1 (신길동)	2020-08-10	2020-08-13	대장 말소
10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도림로63나길 6 (신길동)	2020-08-10	2020-08-13	대장 말소
11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대방천로6가길 8-1 (신길동)	2020-08-10	2020-08-13	대장 말소
12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대방천로6가길 10 (신길동)	2020-08-10	2020-08-13	대장 말소

13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도림로 231-9 (신길동)	2020-08-10	2020-08-13	대장 말소
14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도림로65길 9-2 (신길동)	2020-08-10	2020-08-13	대장 말소
15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시흥대로177길 18-1 (대림동)	2020-08-10	2020-08-13	대장 말소
16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영중로14길 38 (영등포동2가)	2020-08-10	2020-08-13	대장 말소
17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영중로14길 36-1 (영등포동2가)	2020-08-10	2020-08-13	대장 말소
18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신길로34길 1-1 (신길동)	2020-08-10	2020-08-13	대장 말소
19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신길로34길 3 (신길동)	2020-08-10	2020-08-13	대장 말소
20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신길로34길 3-1 (신길동)	2020-08-10	2020-08-13	대장 말소
21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신길로34길 5 (신길동)	2020-08-10	2020-08-13	대장 말소
22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신길로34길 5-1 (신길동)	2020-08-10	2020-08-13	대장 말소
23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도신로54길 5-8 (신길동)	2020-08-10	2020-08-13	대장 말소
24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도신로54길 5-6 (신길동)	2020-08-10	2020-08-13	대장 말소
25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도신로10가길 10 (대림동)	2020-08-10	2020-08-13	대장 말소
26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신길로41다길 12 (신길동)	2020-08-10	2020-08-13	대장 말소
27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디지털로 430 (대림동)	2020-08-10	2020-08-13	대장 말소
28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디지털로 428 (대림동)	2020-08-10	2020-08-13	대장 말소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고시 제2020-157호

도시관리계획(부도심권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서울특별시고시 제2012-22호(2012. 1. 26.)로 결정(변경)된 부도심권 지구단위계획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의 규정에 따라 지구단위계획의 경미한 사항을 결정(변경)하고, 같은 법 제32조와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020년 8월 13일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청장

가. 결정(변경) 취지

부도심권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획지계획, 기타사항에 관한 계획을 변경하는 사항임

나. 도시관리계획(부도심권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조서

○ 가구 및 획지에 관한 결정(변경)조서

- 공동개발에 관한 결정(변경) 조서(영등포동3가 1-6호 외 1필지)

가구	기 정			변 경			비고
	위치	면적(㎡)	획지계획	위치	면적(㎡)	획지계획	
D4	56-1대	42.0	공동개발 (지정)	56-1대	42.0	공동개발 (지정)	
	56-2대	33.1		56-2대	33.1		
	56-3대	55.9		56-3대	55.9		
	55대	1,093.9		55대	46.6		
				55대	1,047.3		
	63대	678.7	-	63대	678.7	공동개발 (지정)	대상지

※ 55번지의 분할(예정)필지는 향후 56-1, 56-2, 56-3 토지 개발 시 원활한 공동개발을 위하여 주민제안자로부터 제출된 이행각서 등에 따라 이행할 것

○ 기타사항에 관한 계획 결정(변경)조서: 보차혼용통로 신설

구 분	위 치	적 용 기 준		비 고
		기 정	변 경	
보차혼용통로	영등포동4가 55	-	24시간 일반인 및 차량이 통로로 이용할 수 있는 구조로 조성(폭 5m)	영등포동4가 56-1,-2,-3, 및 분할필지의 맹지 해소와 차량진출입을 위하여 보차혼용통로 신설

다. 관계도면: 붙임 참조

※ 첨부된 지형도면 등은 공보에 고시를 하기 위한 도면으로써 측량, 그 밖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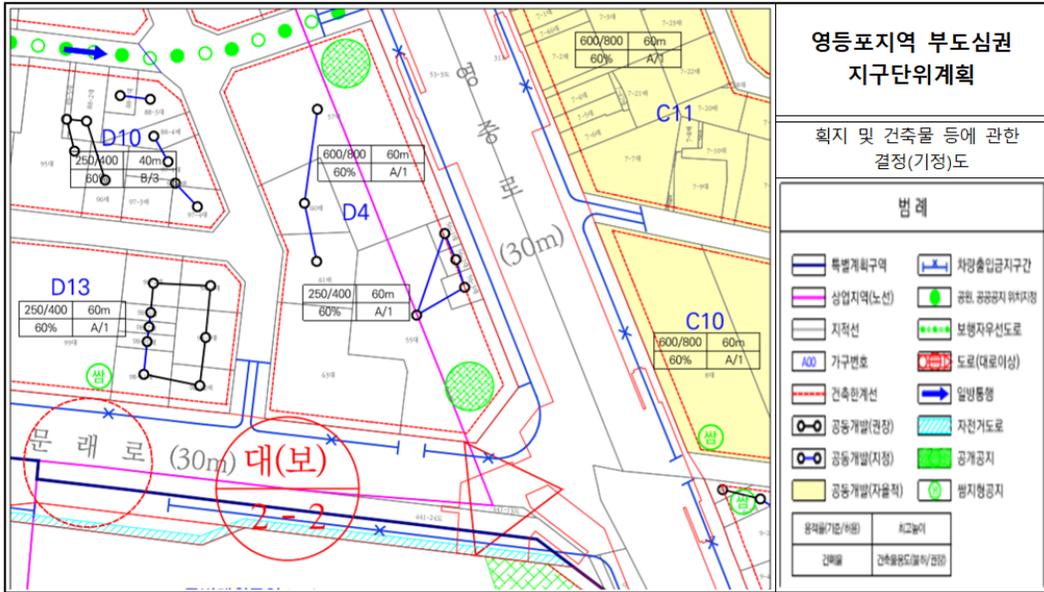
라. 열람장소: 주민의 열람편의를 위하여 영등포구청 도시계획과 (☎2670-3542)에 관계도서를 비치하고 있습니다.

※ 고시문 및 지형도면은 토지이용규제정보서비스(<http://luris.mltm.go.kr>)에 게시할 예정이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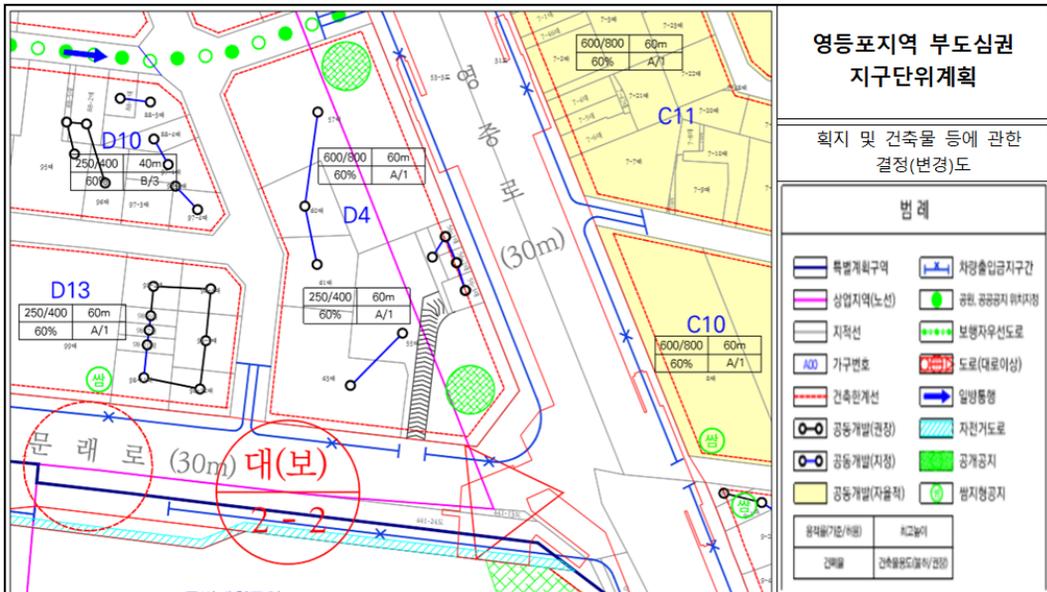
도시관리계획(부도심권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 영등포동3가 55 외 4필지

- 획지 및 건축물에 관한 결정도(기정)



- 획지 및 건축물에 관한 결정도(변경)



공 고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공고 제2020-1322호

공인 등록 공고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공인조례 제8조, 제10조에 의거 공인 등록폐기 및 동 조례 제12조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8월 13일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청장

○ 공인 등록 내역

공 인 구 분	공 인 명	규격 및 재질	인 영	등록사유	등록일
직인	영등포로 간판개선 주민위원장의인	2.4cm * 2.4cm 화양목각 사각		20. 영등포로 간판개선 사업관련	2020. 7. 30.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공고 제2020-1352호

도시관리계획(강남성심병원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안) 재열람공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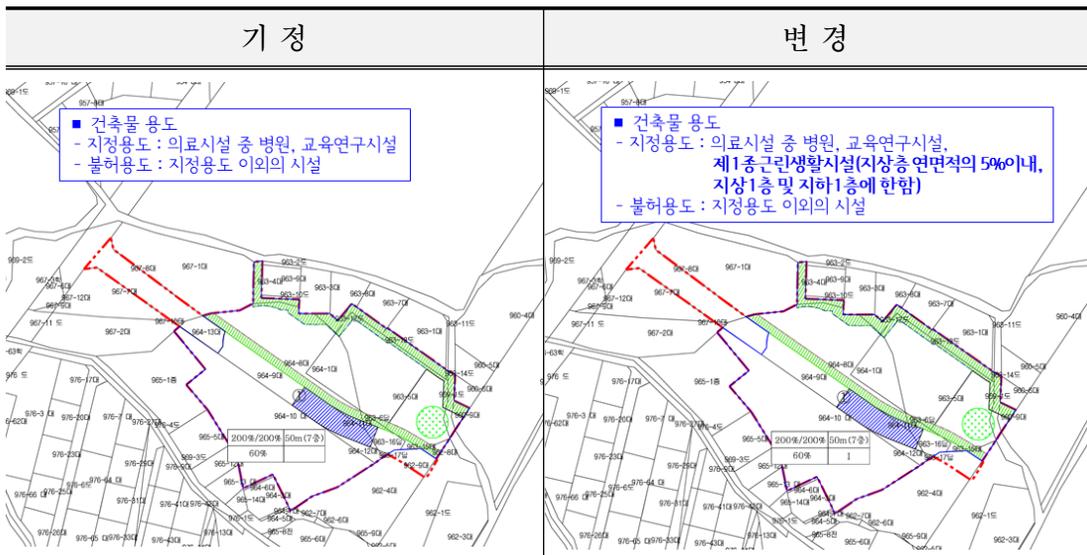
서울특별시고시 제2017-123호(2017.4.13)로 결정되고 서울특별시 영등포구고시 제2019-36호(2019.2.21.)로 변경 결정된 강남성심병원 지구단위계획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 및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 제7조의 규정에 따라 관련 도서를 (재)열람합니다. 본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을 경우 열람기간내 열람장소에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하실 수 있습니다.

2020년 8월 13일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청장

1. 열람기간 : 공고일 다음날로부터 14일간
2. 열람장소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청 도시계획과(☎02-2670-3541)
3. (재)열람사유 : 2020년 제10차 서울특별시 도시·건축공동위원회(2020. 7. 22) 심의내용 반영
4. 열람내용 : 도시관리계획(강남성심병원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안)
 - 가.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조서 : 게재생략
 - 나. 용도지역·지구에 관한 결정조서 : 게재생략
 - 다. 도시기반시설에 관한 결정조서 : 게재생략
 - 라. 가구 및 획지의 규모와 조성에 관한 결정조서 : 게재생략

마. 건축물의 주용도·건폐율·용적률·높이·건축선에 관한 결정조서

도면번호	위치	구분	계획내용	비고	
- ①-1		용도	기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지정용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의료시설 중 병원, 교육연구시설 불허용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지정용도 이외의 용도 	
			변경	<ul style="list-style-type: none"> 지정용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의료시설 중 병원, 교육연구시설, 제1종근린생활시설(지상층 연면적의 5% 이내, 지상1층 및 지하1층에 한함) 불허용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지정용도 이외의 용도 	
		건폐율	<ul style="list-style-type: none"> 60% 이하 		
		용적률	<ul style="list-style-type: none"> 기준/허용용적률 : 200%/200% 상한용적률 212% 이하 <ul style="list-style-type: none"> 용적률 산정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조례로 정하는 용적률) × {1 + 1.3 × 가중치 × (공공시설 등의 부지로 제공하는 면적/공공시설등의 부지 제공 후 대지면적)} - 200% × {1 + 1.3 × 0.97 × (214/4,465)} = 212.1% 	계획용적률 : 195.23%	
		높이	<ul style="list-style-type: none"> 최고높이 50m/최고층수 7층 이하 		
		건축한계선 및 벽면한계선	<ul style="list-style-type: none"> 북측 경계부 : 2~4m 폭원 건축한계선 설정 소로2류(8m) 북측면 : 3m 폭원 벽면한계선(지상 6m이하) 설정 대지내 공개공지와 연계된 안전하고 쾌적한 보행환경 조성 		
도로상부 연결통로	<ul style="list-style-type: none"> 지상부로부터 6m이상 유효높이 확보 				



- 바. 기타사항에 관한 결정조서 : 게재생략
- 5. 열람도서 : 게재생략(열람장소에 비치 및 구청 홈페이지(고시/광고)와 같음)
- 6. 기타 자세한 사항은 영등포구청 도시계획과(☎02-2670-3541)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